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5602(2021.11.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ㅇ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3. 이에 공연시설 · 활동별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공연장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회원사, 소관공연장 및 관계기관 등에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라.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 · 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이용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 작성 예외 *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포함, 공무상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마스크착용 -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내 식당, 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시설 내에서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⑦ 추가적용 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함성, 구소, 합창)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① 방역수칙 준수 ②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폐기 ④ 마스크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물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내 식당, 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시설 내에서 가능 ⑦ 추가적용 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합성, 구호, 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권고 사항	①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② (소독) 일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③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1m) ④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마.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철저 관리하며 운영

○ **국공립공연장**은 민간공연장과 **동일하게 상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

4. 귀 기관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5.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6.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공문).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국립국악중학교장, 재단법인국립극단 예술감독, 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서울특별시장(문화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문화도시정책관), 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 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 경기도지사(예술정책과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중학교장, 예술의전당 사장, (재)정동극장 대표이사, 국악방송 사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서울예술단이사장, (사)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재)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재)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재)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재)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사)한국발레협회 회장, (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사)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주무관 송선미 행정사무관 오종석 공연전통예술과장 전결 2021. 12. 3. 김미라

협조자

시행 공연전통예술과-6119 (2021. 12. 3.) 접수

우 03062 세종시 갈매로 388 세종청사 15동 318호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744 팩스번호 044-203-2871 / sm79m@korea.kr / 부분공개(5)